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79
------	------

2019. 11. 28.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임종국 의원 외 15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1.2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임종국 의원)

1. 제안이유

가. 지역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품권의 발행 및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자치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시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화폐와 제로페이를 융·복합한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자본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2018년 66개에서 현재 177개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음.

1) 2019년 8월 기준, 광역 6개(부산, 인천, 광주, 울산, 강원, 경남), 기초 171개(발행예정 포함)

- 이 중 경남, 창원, 진해 3곳에서는 제로페이를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있음[참고자료].
-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회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음.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2022138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진복의원 등 10인)	2019-08-28
2018745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우의원 등 10인)	2019-02-21
20187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의원 등 20인)	2019-02-20
2015180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1인)	2018-08-30

- 정부 또한 2022년까지 연 2조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기반 조성을 위해 발행금액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공모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해 743억원 4천 9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3조원 규모 발행 목표)
- 서울시도 이러한 시류에 발맞춰, 자치구간 자본 쏠림 현상 및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이하 “상품권”) 발행 계획을 수립하였음.

- 상품권은 총 2천억원 규모로 각 자치구별로 발행되고 자치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서울시가 5%, 자치구가 2% 보조를 통해 총 7%를 할인 제공하게 됨.
- 이에 대해 영등포구, 금천구,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음.

〈서울시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 발행규모 : 2,000억원(일반구매 발행)
- ▶ 발행주체 : 자치구청장
- ▶ 사 용 처 : 해당 자치구 관내를 원칙(자치구간 사용처 확대는 자체 협의)
- ▶ 구매한도 : 1인당 월 50만원(발행주체별)
- ▶ 할 인 율 : 7% (서울시 5%, 자치구 2% 보조)
- ▶ 참 여 사 :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출연사 결제 앱(7개) 외 추가 확대 추진 중
※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쿠콘
- ▶ 발행시기 : 2020년 상반기 중 (유효기한 : 발행후 5년 이내)
- ▶ 소요예산 : 176억원
 - 서울시 : 136억원(할인율 보전금 5%, 운영비 1.65%, 홍보비 등)
 - 자치구 : 40억원(할인율 보전금 2%, 자체 홍보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예산안에 할인율 보전금 100억원, 운영비 33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136억원을 편성하였음.
- 제로페이와 연계된 상품권은 지류나 카드상품권에 비해 유통·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²⁾가 있고,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와 가맹점의 유통량

을 자동 추적함으로써 상품권의 우려사항인 불법유통(일명 “깡”)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현재 제로페이는 총 28개의 결제사업자³⁾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제로페이와 연계된 상품권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전담운영법인)의 출연사인 7개⁴⁾의 결제사만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다. 상품권 발행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4조)

- 안 제2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정의하면서 일반 상품권 외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을 모두 포함하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상품권의 유통지역을 서울시 일원으로,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최초 5년+연장 5년)으로 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가맹점 신청서를 서울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사행산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은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상품권 유통·관리비: 지류 3.8%, 카드 2%후반, 모바일 1.5%

3)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신한중앙회,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전북은행, 케이뱅크, 제주은행,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네이버, 페이코, 하나멤버스, 쿠콘, 한국정보통신, 신세계INC, 한국스마트카드, 롯데멤버스

4)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쿠콘

- 서울시는 현재 별도의 가맹점 등록방식이 아닌 제로페이 가맹점을 상품권의 사용처로 이용할 예정이나, 현재 대형유통기업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배치될 수 있음.
- 제로페이 가맹점 중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가맹점(「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만을 상품권 사용처로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라. 운영대행사의 선정 (안 제6조)

- 안 제6조는 운영대행사를 지정하면서 시장이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과 유지 보수 등의 업무기술을 갖춘 기관을 운영대행사로 선정하거나, 중앙정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한 운영대행사는 제로페이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비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관을 의미함. 상품권 시스템을 개발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대행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제정안에는 상품권의 판매와 환전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정의와 등록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품권의 구매와 처분 등을 행하기 위한 객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업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품권 발행업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대행하고, 환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대행하고 있음.

마.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안 제7조~제9조)

- 안 제7조는 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유통, 교육, 홍보, 기술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 판매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자치구가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상품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급·할인 지원 체계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들 조항의 규정 필요성이 인정됨.

바. 종합의견

- 지역상권을 기반으로 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역내 거래와 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권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며,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치입법적 근거는 필요함.
- 또한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아닌 제로페이 가맹점을 공유하는 사업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제로페이 가맹점 증대와 사용 확대, 상품권 사용 확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상품권이 실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한 모바일상품권 서비스를 시행중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자치구별 복지카드 등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유사기능의 결제수단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상품권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6개구⁵⁾만이 1,330억 원의 수요를 제출한 바 2천억원 규모의 발행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지도 우려됨.
- 제로페이 연계 상품권을 발행한 경상남도의 경우, 발행초기 100억원 소진시까지 10%의 할인율을 지원했던 것을 고려할 때(평시 4%)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발행규모와 할인율 규모에 대한 다각적

5)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등 16개 자치구

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액의 2%(전국적으로 435억 1천 8백만원)를 지원받게 되어 추가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에는 운영대행사 외에 판매대행사의 지정, 환전과 정산에 관한 사항, 가맹점의 등록 취소, 세부 사항들에 대한 시행규칙 위임 등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법규의 입법적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상품권의 명칭을 서울에 특화해 변경하는 한편, 판매대행사의 지정, 가맹점의 등록 취소, 세부 사항들에 대한 시행규칙 위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입법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2조).
- 가맹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7조).
- 업무대행사의 기능과 역할 구체화 및 대행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79
----------	---------

제안년월일 : 2019년 11월 28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상품권의 명칭을 서울에 특화해 변경하는 한편, 판매대행사의 지정, 가맹점의 등록 취소, 세부 사항들에 대한 시행규칙 위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입법적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2조).
- 다. 가맹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라.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7조).
- 마. 업무대행사의 기능과 역할 구체화 및 대행근거를 마련함 (안 제8조).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의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

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안 제4조 제2항 중 “5년의 범위 내에서”를 “5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을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 제6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6조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 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안 제8조(제10조) 제1항 중 “상품권률”을 “상품권을”로 하고,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안 제9조(제11조) 중 “제8조”를 “제10조”로, “제7조 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u>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서울특별시 <u>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u> 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u> 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u>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u> ”란 그 명칭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u> 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p> <p>3.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p> <p>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과 같음></p> <p>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u>5년의 범위 내에서</u>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u>시</u>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5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p>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u>5년의 범위에서</u>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u>서울특별시</u> (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p>	<p><u>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u> <u>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u> <u>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u> <p><u>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u> <u>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u>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운영대행사의 선정) 시장은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거나, 중앙 정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p> <p>제7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p>	<p>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p> <p>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 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사업 및 지원) ①~③ <현행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8조(자치구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혹은 권역별 <u>상품</u></p>	<p>제10조(자치구 지원) ① _____ ----- <u>상품</u></p>

제 정 안	수 정 안
<p><u>권</u>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p>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u>권</u>을-----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 ----- ----- -----.</p>
<p>제9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할 때에 제7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6조에 따른 공통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 제10조 ----- 제9조제3항----- 제8조 ----- -----.</p>
<p><신 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상품권의 사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유 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등의 업무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치구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자치구별 혹은 권역별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 근거
3. 상품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지원의 조건)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자치구를 지원을 할 때에 제9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8조에 따른 공동 운영대행사 이용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